등록번호	복지정책과-1508
등록일자	2016.1.19.
결재일자	2016.1.20.
공개구분	대시민공개

주무관	자원봉사팀장	복지정책과장	복지문화국장		
고연희	김철진	박정숙	01/20 오제성		
협 조					

사회단체 활성화 및 구정발전을 위한

2016년 사회단체 구정참여사업 지원계획

서 대 문 구

복지정책과

사회단체 활성화 및 구정발전을 위한

2016년 사회단체 구정참여사업 지원계획

지역발전을 위해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사회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민·관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사회단체 활성화 및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

Ⅰ 지원근거

-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, 제32조의2 ~ 제32조의10
- 지방보조금 관리기준(행자부 예규)
-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
-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」

Ⅱ 지원개요

- **2016년 사회단체 지원 예산액**: 금3,308천원(민간경상사업보조)
  ※ 2015년도 지원현황: 1개 단체 3,308천원[(사)서울청소년효행봉사단]
- **사업기간**: 2016년 3월 ~ 12월
- **지원범위**
  - 사회단체 사업비: 일부 또는 전부 지원 가능
  - 사회단체 운영비: 「지방재정법」 제30조의2 제2항에 따라 **법령에 명시적 근거**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
    - **사업비 지원이 원칙이고, 운영비는 전체 지원액 감안하여 적정 범위 내에서 지원**
- **지원대상**
  -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
    -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 제4조에 의한 비영리단체등록증 발급 단체
    - 구성원 상호 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않는 단체

- 단체 중앙조직이 비영리단체(법인)로 등록된 경우 산하 구협의회(위원회)를 비영리단체(법인)로 간주함

• 법률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

• 서대문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

제외대상

○ 동일단체의 유사·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

○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보기 곤란한 아래의 단체

-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
-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
-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·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」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

※ 국가나 서울시의 비영리민간단체 참여사업 등 동일(또는 유사)사업에 대하여 중복 신청한 단체의 경우 또는 선정시점이 달라 이중 선정·지원되었을 경우 선정 취소 및 환수 조치함

■ 공모사업분야

• 우리구가 권장하는 민·관 협력사업 또는 공익사업

-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사업 및 자원봉사 활성화(청소년 활동 지원)

Ⅲ 세부추진계획

■ 사회단체 구정참여사업 업무 흐름도

지원사업 공모 공고	사업신청 및 접수	사업검토	사업심의 및 선정
2016. 1. 25. ~ 2. 5.	2016. 1. 25. ~ 2. 5.	2016. 2. 11. ~ 2. 15.	2016. 2월말

보조사업자 결과통보	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	정산서 및 사업보고서 제출	평가
2016. 3월	2016. 3월	2017. 1월	2017. 1월

■ 사회단체 구정참여사업 공모 공고

- 공고기간: 2016. 1. 25. ~ 2. 5.(12일간)
- 공고방법: 구 홈페이지 게시
- 공고내용: 지원대상, 참여사업, 신청기간 및 장소, 신청서류 등

【붙임1】 2016년도 사회단체 구정참여사업 공고 공고(안)

■ 사회단체 구정참여사업 신청 및 접수

- 접수기간: 2016. 1. 25. ~ 2. 5.(12일간)
- 접수장소: 서대문구 복지정책과
- 신청방법: 방문 및 우편접수
  - 방문신청은 근무시간 내, 우편접수는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
- 신청서류: 지원신청서, 단체자기소개서, 사업계획서, 사업추진실적 등

【붙임2】 2016년도 사회단체 구정참여사업 신청서류

■ 사업검토

- 신청서류 접수 후 단체의 적합성, 신청사업 및 신청금액,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·타당성 등 검토 후 정책기획담당관 제출 **【붙임3】 검토의견서**
- 주요 검토사항
  - 법률 또는 조례 지원규정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중복지원 여부
  - 단체의 적합성 및 신청사업 예산액의 타당성(사업비 지원 원칙)
  - 단체의 전문성·책임성 및 최근 1년간 공익활동 실적
  - 단체설립목적과 신청사업의 연계성 여부 등

■ 사업 심의·선정 및 결과통보

- 지방보조금심의회 개최: 2016. 2월중(정책기획담당관)
  - 심의안건: 2016년 상반기 공모절차에 따른 보조사업선정 심의
- 심의사항
  - 사회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
  -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
- 심의결과 통보
  - 심의위원회 선정결과 통보: 2016. 3월
  - 사회단체보조금 교부결정서를 지원결정된 사회단체에 통지

■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

- 신청 및 교부기한: 2015. 3월
- 지원통보된 사회단체는 보조금에 대한 별도계좌를 개설하고 사회단체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실행계획서를 제출
- 단체 사업계획에 따라 교부

■ 사업보고서 제출

- 제출부서: 서대문구 복지정책과
- 제출기한: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
- 제출서류: 보조금정산서, 보조금집행세부내역서, 사업추진실적보고서, 지출결의서, 통장거래내역 사본, 영수증, 사진 등 증빙자료 첨부

■ 소관부서 평가 및 보조금심의위원회 성과평가

-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집행에 관한 평가 실시
- 자체평가 후 심의회 최종평가 실시: 2017. 1월

Ⅳ 행정사항

■ 지방보조금심의회 개최 ····· 정책기획담당관

■ 언론 보도 등 홍보 ····· 홍보담당관

붙 임 1) 2016년 사회단체 구정참여사업 공고 공고(안)
2) 2016년 사회단체 구정참여사업 신청서류
3) 검토보고서